

인천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2460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1. A

2. 중국인 B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9,830,168원 및 그 중 19,826,310원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중국인 B 사이에 2021. 8.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중국인 B는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26. 접수 제3517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오승준

별지